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 9. 11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13년 8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9월 5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3. 9. 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엄혜숙)

가. 제안이유

- 민간위탁운영의 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완함으로써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(제4조)
 - 계약기간 연장 조항인“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”조항 삭제
-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조항 신설(제4조)
 - 수탁기관 선정기준·방법 등 명시(공개모집)
 -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 규정 명시
(여성위원 40% 이상, 위원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)
- 협약내용 공증이행 조항 신설(제4조)

-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 보호 조항 신설(제6조)
-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맞게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침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4조제3항에 수탁기관 선정시 “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,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”에서 “수탁기관 선정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”로 변경하여 위탁기간 연장조항을 삭제하였고
 - 안 제4조제2항, 제4항, 제5항에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
 -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
 -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며
 -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%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고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7조에서는 30%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
 - 수탁자와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함.
 - 안 제6조제5항에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
 -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을 주민이 이해

하기 쉽게 정비함.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6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참고로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설치·운영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시비 50%, 구비 50%로 충당되고 2013년도 사업예산으로 시비포함 5억9,100만원이 편성되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민간위탁운영의 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
보완함으로써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(제4조)

- 계약기간 연장 조항인“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”조항 삭제

나.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조항 신설(제4조)

- 수탁기관 선정기준·방법 등 명시(공개모집)

-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 규정 명시

(여성위원 40% 이상, 위원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
해당 심의에서 제척)

다. 협약내용 공증이행 조항 신설(제4조)

라.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 보호 조항 신설(제6조)

마.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맞게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정신보건법 제13조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2. 10. 25 ~ 11. 14, 20일간)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(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인정하는 때에는”을 “인정하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수탁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1.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~9명의 위원으로 하되, 그 중 40%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고, 위원장,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며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 2.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 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4.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

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간,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의 의무 및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다시 위탁”을 “재위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”로 하며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.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7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수탁자에 대하여”를 “수탁자에게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발생한”을 “발생하였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위반한 때”를 “위반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않은 때”를 “않은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인정될 때”를 “인정될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일체”를 “모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”을 “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”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에 대하여”를 “사람에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있는 자”를 “있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도”, “있는 자”를 “있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사업)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</p>	<p>제3조(사업)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<p>제4조(위탁운영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<u>인정하는 때에는</u> 정신보건시설,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<u>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,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	<p>제4조(위탁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정하면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수탁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수탁기관 선정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<u>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1.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<u>6~9명의 위원으로 하되, 그 중 40%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고, 위원장,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〈<u>신 설</u>〉</p> <p>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건강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<u>다시 위탁</u> 할 수 없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해당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며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</p> <p>2.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4.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간,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의 의무 및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받은 기관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.</p> <p>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대해서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재위탁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제5조에 따른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,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<u>대하여는</u> 책임을 진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7조(운영비 지원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지도 및 감독)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<u>대하여</u>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시설,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9조(위탁의 취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수탁자가 제6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</p> <p>2.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해서</u> ----- -.</p> <p>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.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</p> <p>제7조(운영비 지원)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</p> <p>제8조(지도 및 감독) ① ----- <u>수탁자에</u> <u>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위탁의 취소) ① ----- ----- <u>발생</u> <u>하였을</u> -----.</p> <p>1. ----- <u>위반한 경우</u></p> <p>2. ----- ----- - <u>않은 경우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3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</p> <p>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, 각종 시설, 자료,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p>제10조(이용제한)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</p> <p>2.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3. ----- ----- 인정될 경우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모두 -----.</p> <p>③ -----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 -----.</p> <p>제10조(이용제한) ----- ----- 사람에게는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있는 사람</p> <p>2. 그 밖에 ----- ----- 있는 사람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.</p>

[별표 1]

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구 분		평가요소	평가기준	배 점		
기술 평 가	정량적 평 가 (30)	기술인력 보유상태	○ 제안기관 시설·장비 현황	○ 종합병원 ○ 병원 ○ 의원	5 3 1	5
			○ 해당분야(정신과, 신경과) 전문의 수	○ 4명 이상 ○ 2~3명 ○ 1명	5 3 1	5
			○ 센터장(전문의) 경력	○ 3년 이상 ○ 1년~3년 미만 ○ 1년 미만	5 3 1	5
		사업수행 (실적)	○ 주요 사업실적 (연간 총 진료환자 수)	○ 500명 이상 ○ 300명~500명 미만 ○ 300명 미만	10 6 3	10
			○ 관련분야(정신과)클리닉 운영수준	○ 3년 이상 ○ 1년~3년 미만 ○ 1년 미만	5 3 1	5
	기능 평 가	사업계획서 내용평가	○ 사업정책 이해도 및 사업추진전략	○ 우수 ○ 보통 ○ 미흡	8~10 5~7 4점 이하	10
			○ 사업계획의 구체성, 타당성, 독창성	○ 우수 ○ 보통 ○ 미흡	8~10 5~7 4점 이하	10
			○ 특화된 사업추진 및 운영 마인드	○ 우수 ○ 보통 ○ 미흡	8~10 5~7 4점 이하	10
		지역사회 연계평가	○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계획	○ 우수 ○ 보통 ○ 미흡	8~10 5~7 4점 이하	10
			○ 기타 연계 가능한 자원 발굴 계획	○ 우수 ○ 보통 ○ 미흡	8~10 5~7 4점 이하	10
정성적 평 가 (70)	기타 평가	○ 사업에 대한 열의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	○ 우수 ○ 보통 ○ 미흡	8~10 5~7 4점 이하	10	
		○ 인력관리 방안 (전문의 상담 지원, 직원결원 시 대체방안 등)	○ 우수 ○ 보통 ○ 미흡	8~10 5~7 4점 이하	10	
합 계				100		